

附錄：環境關聯法律

- 廢棄物管理法
- 汚水·糞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 海洋汚染防止法

廢棄物管理法

1991. 3. 8. 改正
法律 第4363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하고, 廢棄物의 再活用을 촉진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 알카리·動物의 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特定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特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廢油·廢酸·廢 알카리·廢 고무·廢合成樹脂등 環境 및 國民保健에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廐棄物의 燃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5.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과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말한다.
6.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燃却·破碎·埋立등의 方法에 의하여 一般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7.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燃却·破碎·中和·固形化·埋立등의 방법에 의하여 特定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再活用”이라 함은 廢棄物을 再生하거나 再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 이 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과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등과 污水·糞尿 및 廉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에 의한 污水·糞尿 및 廉産廢水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처리에 있어서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污染防治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管理하여야 하며, 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을 能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의 清掃意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特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特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廢棄物處理에 관한 技術을 研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第5條(一般廢棄物의 廣域管理)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2이상의 市·郡·區에서 발생하는 一般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總理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條(國民의 責務) ① 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は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第7條에 規定된 地域 또는 施設을 管理하고 있는 者는 당해 地域 또는 施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廢棄物의 投棄禁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文化遺跡地·公園·廣場·

野營場·海水浴場·道路·港灣·漁港·下水道·河川·湖沼·山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또는 施設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第8條(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 市·道知事은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과 特定廢棄物의 發生量·發生地域 및 處理施設 設置의 妥當性 檢討 資料등을 基礎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9條(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告示)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은 第8

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位置·規模·面積·設置時期·事業施行者등을 명시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市·道公報에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第10條(土地등의 收用·사용)**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라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 또는 變更은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 또는 變更을 한 날부터 2年이내에 하여야 한다.

- 第11條(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浸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 2 章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

第 1 節 一般廢棄物

- 第12條(一般廢棄物管理區域)** 全國을 一般廢棄物管理區域으로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 第13條(一般廢棄物의 처리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管理區域안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 및 방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116 環境法研究(第13卷)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그 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4條(多量排出一般廢棄物의 처리등) ①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一般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多量排出者”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당해 廉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② 多量排出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廉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第15條(一般廢棄物排出者の 處理協助등) ① 一般廢棄物管理區域안에 있는 一般廢棄物이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一般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 建物에서排出되는 一般廢棄物 중 燒却·埋立등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一般廢棄物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一般廢棄物排出者は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一般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第16條(一般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一般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排出者が 設置하는 保管施設 또는 容器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一般廢棄物排出者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7條(一般廢棄物處理業) ① 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著(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著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一般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一般廢棄物收集・運搬業

一般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一般廢棄物中間處理業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一般廢棄物을 燃却・破碎등의 方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一般廢棄物最終處理業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一般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方法에 의하여 最終處理하는 營業

③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볼일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18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憲役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9條(許可의 取消 등) ① 市・道知事은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8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以上 휴업한 때
4.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市·道知事는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第18條 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 期間을 6月 이상 주어야 한다.

第20條(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1)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2)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17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4)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5) 環境處長官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管理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개선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命할 수 있다.

(6) 環境處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21條(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 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設計·施工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設計·施工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計·施工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事業場을 경영하는 者가 자기의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하여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廢棄物處理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경우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第18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登錄의 取消 등) ① 環境處長官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1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8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것이 判明된 때
3. 登錄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때
4.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6. 設計 · 施工業者가 그 設計 · 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② 第19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第1號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3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 · 施工業者の 繼續工事) ①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의 設計 · 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
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を
監理 · 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 · 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 · 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設計 · 施工業者로 본다.

第 2 節 特定廢棄物

第24條(特定廢棄物排出者の 義務등) ① 特定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特
定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特定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產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등의 方法으로 特定廢棄物의 발
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 ② 特定廢棄物排出者は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
여야 한다.
- ③ 特定廢棄物排出者は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特定
廢棄物의 發生量 · 再活用狀況 · 處理實績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
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第25條(特定廢棄物의 처리) ① 特定廢棄物排出者は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特
定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目的으로 다른 사람의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總理令이 정하는 者는 特定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施設(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에의 委託處理에 관한 手數料 기타 委託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④ 特定廢棄物排出者는 一般廢棄物과 特定廢棄物을 分離하여 보관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 및 방법에 따라 特定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業者등이 그 業務를 委託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特定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4項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6條(特定廢棄物處理業) ① 特定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特定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営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特定廢棄物收集·運搬業

特定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営業

2. 特定廢棄物中間處理業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特定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方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営業

3. 特定廢棄物最終處理業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特定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방법에 의하여 最終處理하는 營業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④ 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의 發生量과 特定廢棄物處理業者의 地域의 分布등을 고려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⑤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와 許可의 取消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7條(特定廢棄物의 運搬·處理申告) 特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8條(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⑤ 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管理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개선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⑥) 環境處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3章 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等

第29條(廢棄物의 減量化) 廢棄物을 排出하는 者는 廢棄物의 發生量減少를 위하여 廢棄物의 再活用 및 製品製造方法의 개선등 필요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30條(國家등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廢棄物의 發生量減少와 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 및 再活用製品의 優先購買등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31條(廢棄物의 再活用 申告等) ① 廢棄物을 原料·材料·燃料등으로 再活用(再活用을 目的으로 하는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者중 一般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對象品目 및 方法등을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總理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施設·裝備·技術能力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32條(廢棄物의 回收措置) ①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輸入·販賣등을 함에 있어서 그 製品·加工·輸入·販賣등에 사용되는 材料·容器나 製品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 그 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材料·容器등이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污染物質·水質污染物質·特定大氣有害物質·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有毒物·特定有毒物中 總理令에서 정하는 物質을 함유하고 있거나 多量으로 製造·加工·輸入·販賣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製品·材料·容器등이 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回收 및 적정한 처리방법을告示하고, 그 製造·材料·容器등의 製造·加工·輸入·販賣業者에게 그回收 및 적정한 처리등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が告示를 하거나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第33條(廢棄物의 回收·處理費用의 預置등)**
- ① 環境處長官은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容器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容器가 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製品·容器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에 매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團體가 自體基金을 造成하여 廢棄物을回收·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回收·처리의 범위안에서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廉棄物管理基金에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預置하지 아니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預置하여야 할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預置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環境處長官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製品·容器의回收·처리를 위한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남부된 預置金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預置金을 반환하되, 그返還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남부된 預置金額보다 많은 때에는 그 差額은 廉棄物管理基金의 부담으로 한다.
 - ④ 環境處長官은 年度末에 預置金을 精算함에 있어서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가 실제回收·처리하지 아니한 廉棄物의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 이미 남부한 預置金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하되, 그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⑤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 또는 差額을 納付期限까지 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4條(廢棄物管理基金) 廢棄物의 再活用 및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廢棄物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35條(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각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
2.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3.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預置金
4.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地事後管理를 위한 積立金
5.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出捐金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36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號의 用途에 이를 사용한다.

1. 再活用廢棄物의 購入 및 備蓄
2. 預置金의 還拂
3. 埋立地事後管理의 代行
4. 廢棄物再活用施設의 設置 및 再活用技術의 개발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第37條(基金의 運用 · 管理) ① 基金은 環境處長官이 運用 · 管理한다.

- ② 環境處長官은 基金의 運用 · 管理에 관한 事務를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 의한 韓國資源再生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 ③ 基金의 運用計劃 및 決算등에 관하여는 豐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8條(基金의 借入) 環境處長官은 基金의 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金融機關이나 다른 基金으로부터 長期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第 4 章 廢棄物處理業者등에 대한 指導 · 監督등

第39條(技術管理人)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 · 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유지 · 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

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技術管理를 하는 경우와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の 資格·준수사항 및 技術管理代行契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0條(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教育) ① 環境處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 등에 대하여 그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의 實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1條(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등(第7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產·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等)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1.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2.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管理하는 者
3.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4.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
5.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management하는 者
6.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7. 第32條 第2項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第42條(休業·廢業등의 申告)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者 또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43條(보고·検査등) ①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内보여야 한다.

第5章 补 則

第44條(廢棄物의 輸入制限) 環境處長官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廢棄物의 輸入을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45條(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生活環境保全상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者에 대하여 그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一般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一般廢棄物을 처리한 경우
 2. 特定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경우
-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令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辯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全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6條(代執行)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그 처리를 委託한 者가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그 처리를 委託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47條(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등) ① 第20條 第2項 및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第17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및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鎖한 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產이나 周邊環境의 被害防止를 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의 積動등 事後管理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預置費用을 납부한 者,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者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預置金을 事前積立한 者가 事後管理業務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命할 수 있으며, 그 期間내에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은 납부된 預置費用 · 履行保證保險金 또는 預置費用의 事前積立金으로 충당된다.

第48條(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預置金) ① 環境處長官은 第4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 浸出水의 漏出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產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基金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預置를 면제하거나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management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 費用(이하 “事後管理預置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 ·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預置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 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事後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管理預置金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事後管理預置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49條(事後管理預置金의 事前積立) ① 環境處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基金에 事前積立하게 할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金額이 第4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預置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50條(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土地利用制限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4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鎖한 후 漫出水의 漏出, 堤防의 遺失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產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 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 土地利用을 公園, 樹林의 檢裁,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 用途를 제한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utilization制限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基金에서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損失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51條(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 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廢棄物埋立施設등 廢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

境의 保全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 地方自治團體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2條(國庫補助) 國家는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號의 구분에 따라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의 경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2. 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第53條(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 또는 再活用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第54條(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 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實績을 다음해 2月말까지 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團束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55條(許可등의 手數料) 第17條 第1項·第21條 第3項 및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6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7條(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 第1項, 第22條 第1項 및 第26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나 營業의 정지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 또는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8條(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 등의 效率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理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章 罰則

第5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3. 第20條 第6項 또는 第28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을 한 者
5.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
6.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特定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7.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第60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처리한 者
2.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변경한 者
3. 第19條 第1項 또는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4. 第20條 第2項 또는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5. 第20條 第5項 또는 第28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施工을 한 者
7.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변경한 者
8.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者
9.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5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者
10. 第25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11.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2.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3. 第4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4. 第5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의 用途制限에 위반하여 土地를 이용한 者

第61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 또는 運搬한 者
2. 第14條 第1項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처리한 者

者

4.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을 위반한 者
5. 第17條 第3項 또는 第2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20條 第2項 또는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7. 第20條 第4項 또는 第28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理한 者
8. 第24條 第2項·第27條 또는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5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收集 또는 運搬한 者
10.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11. 第31條 第2項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再活用한 者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者
13.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4.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62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17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을 받은 者

5. 第20條 第3項 또는 第2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2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7.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8. 第4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일이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營業의 許可日 前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을 계속할 수 있다.

第3條(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2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할 特定廢棄物排出者は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이내에 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4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당해 施設을 改修하여야 한다.

第5條(產業廢棄物再生利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의 再生利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 第5號중 “廢棄物의 처리를”을 “廢棄物의 처리와 再活用을”로 한다.

② 保健環境研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第1項 第3號중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一般廢棄物·產業廢棄物·污水淨化施設·畜產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등”을 “廢棄物管理法과 污水·糞尿및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에 의한 一般廢棄物·特定廢棄物·污水淨化施設·畜產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등”으로 한다.

汚水·糞尿 및 廉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1991. 3. 8. 制定
法律 第4364號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汚水·糞尿 및 廉産廢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清潔히 하고 水質污染을 감소시킴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污水”라 함은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더러운 物質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水洗式便所·沐浴湯·주방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한다.
2. “糞尿”라 함은 便所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淨化槽의 清掃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廉産廢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排出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을 말한다.
4. “污水淨化施設”이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5. “淨化槽”라 함은 水洗式便所에서 나오는 汚水를 沈澱·分解등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6. “廉産廢水淨化施設”이라 함은 廉産廢水를 沈澱·分解등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7.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등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最終的으로 처리하여 河川·바다 기타 公共水域에 放流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이라 함은 家畜을 密集하여 飼育하는 地域의 畜產農家에서 발생하는 畜產廢水를 沈澱·分解등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共同으로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產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糞尿處理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管理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 糞尿 및 畜產廢水로 인한 水質汚染의 防止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產廢水의 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糞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대한 技術을 研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糞尿 및 畜產廢水의 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第4條(糞尿 및 畜產廢水의 廣域管理 등)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2이상의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糞尿處理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을 共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糞尿 및 畜產廢水의 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糞尿處理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도록 勸告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

保全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條(放流水水質基準) ① 污水淨化施設·淨化槽·糞尿處理施設·畜產廢水淨化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안의 水質污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第6條(他人의 土地안의 出入等) ①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그 命令에 의하거나 委任을 받은 者는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에 관한 調査·測量 및 工事を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特別한 用途가 없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假道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樹林 기타의 障碍物을 제거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거나 障碍物 등을 제거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日出전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인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7條(損失補償)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사용이나 障碍物의 제거 또는 變更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②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을 할 때에는 損失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 ③ 第2項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8條(土地등의 收用·사용)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處理施設 또는 齋産廢水共同處理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21條 第2項 및 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은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第2章 汚水의 처리

第9條(污水淨化施設의 設置)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建物 기타 施設物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 또는 共同으로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場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汚水를 流入하여 처리하는 경우
 2. 環境處長官이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할 필요가 없는 地域으로 지정・告示한 地域의 경우
 3. 기타 總理令으로 정하는 경우
- ② 汚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3) 汚水淨化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0條(淨化槽의 設置) ① 水洗式便所를 設置하는 者는 淨化槽를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에 水洗式便所에서 발생되는 汚水를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

2.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場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水洗式便所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雨水污水分流式下水道를 통하여 流入·처리하는 경우

3. 環境處長官이 淨化槽를 設置할 필요가 없는 地域으로 지정·告示한 地域의 경우

② 淨化槽를 設置 또는 變更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淨化槽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1條(污水淨化施設등의 竣工検査) 第9條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를 設置 또는 變更하는 者가 그 設置 또는 變更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第12條(汚·廢水併合處理에 관한 特例)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水質污染防治施設로서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동일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水·糞尿 또는 畜產廢水와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量 併合處理하는 施設을 設置한 事業場은 이 法에 의한 汚水淨化施設·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각각 設置한 것으로 본다.

第13條(污水淨化施設등의 設計·施工) ① 汚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施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計·施工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汚水處理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경우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그 施工을 監理하게 할 수 있다.

③ 淨化槽를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의 設計 ·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 · 施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污水淨化施設등의 管理等) ①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당해 施設이 設置된 建物에서 排出되는 汚水를 無斷放流하거나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第9條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과 内部清掃등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를 유지 · 管理하여야 한다.

③ 市長 · 郡守 · 區廳長은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 · 管理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 · 代替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④ 市長 · 郡守 · 區廳長은 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2項의 管理基準에 의한 淨化槽의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하여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15條(簡易污水淨化槽의 設置) ① 市長 · 郡守 · 區廳長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다음 各號의 1의 營業을 행하는 者에게 그 주방 · 沐浴湯등에서 발생하는 汚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簡易污水淨化槽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1. 觀光振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또는 觀光客利用施設業
 2.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또는 調理販賣業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污水淨化槽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6條(公衆便所의 設置 및 管理) 市長·郡守·區廳長은 多數人이 通行하거나 모이는 場所에 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便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衆便所를 設置하고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第17條(水質汚染物質등의 사용제한 勸告) 環境處長官은 污水의 水質을 현저히 惡化시킨다고 판단되는 特定工產品에 대하여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 및 期間을 정하여 그 販賣 또는 사용의 제한을 勸告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販賣者 또는 使用者는 特別히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章糞尿의 처리

- 第18條(糞尿處理基本計劃등) ① 市·道知事는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9條(糞尿의 처리)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糞尿를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奧地·僻地等 糞尿의 收集·運搬·처리가 어려운 地域에 대하여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域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 便所가 設置되어 있는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器 運行하는 者 및 移動式便所를 設置·管理하는 者는 그 便所에서 排出되는 糞尿를 스스로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의 收集·運搬 및 處理基準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⑤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集·運搬된 糞尿에 대하여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를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20條(糞尿등의 再活用) ① 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再活用의 目的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糞尿 또는 畜產廢水의 再活用量이 1日 平均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의 目的으로 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처리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의 경우 生活環境에 被害가 생기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처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1條(糞尿處理施設의 設置) ① 糞尿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2條(糞尿處理施設의 設計·施工) 糞尿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施工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3條(糞尿處理施設의 管理등) ① 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과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糞尿處理施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管理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第4章 畜產廢水의 처리

第24條(畜產廢水排出施設에 대한 設置許可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產廢水를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模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畜產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產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그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排出施設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5條(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등)** ①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 또는 變更 허가를 받거나 變更 신고를 한 자와 同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 또는 變更 신고를 한 자(이하 “畜産業者”라 한다)가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함에 있어서는 당해 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이 하로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單獨 또는 共同으로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여야 한다. 다만,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의 方法으로 畜産廢水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 第26條(畜産廢水淨化施設의 竣工検査)** 畜産業者は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 第27條(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자는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자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자로 하여금 設計·施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 또는 變更 신고를 한 자가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에 의하여 畜産廢水淨化施設을 스스로 設置 또는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8條(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淨化施設의 管理등)** ① 畜産業者は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에 적합하도록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淨化施設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② 畜産業者は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및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의하여 畜産廢水淨化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畜産廢水排出 및 畜産廢水淨化

施設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管理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畜産業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第29條(排出賦課金) ① 環境處長官은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污染物質을 排出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污染物質의 種類·排出期間·排出量등을 算定基準으로 하는 排出賦課金을 납부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徵收한 때에는 環境管理工團法에 의한 環境污染防治基金에 이를 納入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環境處長官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은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0條(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의 設置) ①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이 第24條 第4項에서 規定한 申告對象이하의 小規模畜產廢水排出施設에서 발생되는 畜產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1條(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의 管理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및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管理되는 때에는 해당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第32條(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에 대한 費用負擔)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에서 처리되는 畜產廢水量 排出하는 者로부터 당해 施設의 유지·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되는 費用은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의 유지·管理의 用途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簡易畜產廢水淨化槽의 設置勸告等)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排出施設의 施設에서 발생되는 畜產廢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簡易畜產廢水淨化槽의 設置를 勸告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畜產廢水淨化槽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4條(家畜飼育의 제한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地域을 지정하여 그 地域안에서는 家畜의 飼育을 제한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畜舍의 移轉을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이상의 猶豫期間을 주어야 하며, 移轉에 따른 財政的 지원·數地斡旋등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5章糞尿關聯營業의 許可등

第35條(糞尿關聯營業) ① 糞尿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나 淨化槽의 清掃를 業(이하 “糞尿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糞尿關聯營業의 業種區分과 営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糞尿收集·運搬業

糞尿(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를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営業

2. 糞尿處理業

糞尿處理施設을 갖추고 糞尿를 最終的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営業

3. 淨化槽清掃業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淨化槽를 清掃하고, 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営業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営業區域·期限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糞尿發生量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糞尿關聯營業者”라 한다)의 地域의 分布등을 고려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⑥ 糞尿關聯營業者는 당해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36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糞尿關聯營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懲役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糞尿關聯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37條(許可의 取消 및 課徵金賦課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6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다만, 法人の 任員중 第36條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以上 休業한 때
 4. 第19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위반하여 糞尿를 收集·運搬 또는 처리한 때
 5.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關聯營業者가 第1項 第4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당해 事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營業停止가 같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납부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4)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5)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徵收主體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하되, 環境保全事業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 ① 糞尿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營業區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第36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9條(淨化槽製造業) ① 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中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試驗製造를 위하여 淨化槽를 製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淨化槽製造業者”라 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構造・規格등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게 淨化槽를 製造・販賣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한 淨化槽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3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0條(登録의 取消 등)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淨化槽製造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登録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期間을 정하여 그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登録을取消하여야 한다.

1. 第38條 第3項 또는 第39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36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다만, 法人の 任員中 第36條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録을 한 때
3. 登録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以上 休業한 때
4. 第38條 第1項·第2項 또는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사람에게 登録證을 貸與한 때
6. 設計·施工業者가 그 設計·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一括하여 下都給한 때
7. 淨化槽製造業者가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淨化槽를 製造·販賣한 때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 한 때

第41條(登録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施工業者の 繼續工事) ①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設計·施工業者は 그處分전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의 設計·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を 監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設計·施工業者로 본다.

第6章 捷 則

第42條(技術管理人) ①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를 처리하기 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 規模이상의 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한 경우
 2. 水質環境保全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이 選任된 事業場의 경우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選任 또는 改任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の 資格基準·준수사항 및 技術management代行契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3條(技術管理人등의 教育)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糞尿處理擔當者 등을 고용한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該當者에 대하여 環境處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44條(帳簿의 記錄·보존)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 또는 農産廢水를 再活用하는 者,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糞尿 또는 農産廢水의 收集場所·收集量 및 處理狀況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第45條(休業·廢業등의 申告)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者,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者는 그 营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46條(보고·검查) ①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事業者, 第20條의 規定에 의한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再活用하는 者, 第35條의 規定에 의한糞尿關聯營業者,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者, 第39條의 規定에 의한淨化槽製造業者에 대하여 污水·糞尿 및 畜產廢水의 發生 및 처리, 再活用, 處理施設의 管理, 糞尿處理施設·污水淨化施設·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이나 淨化槽의 製造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污水淨化施設·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이 設置된 建物 기타 施設物에出入하여 그 유지·管理狀態를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7條(國庫補助) 國家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糞尿處理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第48條(處理實績의 보고) ① 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管轄區域안에서의 污水·糞尿 및 畜產廢水의 處理實績을 다음해 2月末까지 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污水·糞尿 및 畜產廢水業務와 관련된 指導·團束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49條(許可등의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 또는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排出施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2.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3. 第38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 · 施工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第50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의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1條(聽聞) 環境處長官, 市 · 道知事 또는 市長 · 郡守 · 區廳長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2.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 · 營業停止命令 또는 課徵金納付命令
3.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 營業停止命令

第52條(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 ·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 · 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糞尿處理施設 ·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 및 公衆便所의 效率적인 管理 ·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總理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 · 運營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7章 罰則

第53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3.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 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한 者
4.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로서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지 아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사용한 者
5. 第2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로서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畜產廢水排出施設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6.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業을 한 者
7.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한 者
8.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한 者

第54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淨化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3.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4.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收集·運搬業 또는 淨化槽清掃業을 한 者
5.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業의 變更한 者
6.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

更登錄을 한 者

7.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8.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 · 施工을 業으로 한 者
9.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10.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第55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淨化槽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2. 汚水淨化施設에 관한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3. 第19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위반하여 糞尿를收集 · 運搬 또는 처리한 者
4.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活用을 目的으로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처리한 者
5. 第2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者로서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사용한 者
7.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로서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畜産廢水排出施設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8. 第2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로서 第2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9. 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10.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收集 · 運

搬業, 淨化槽清掃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11.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收集·運搬業 또는 淨化槽清掃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12. 第37條 第1項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13.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14.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15.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者

第56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의 出入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2.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淨化槽를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3. 淨化槽에 관한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4.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再活用한 者
5.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
6.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로서 第28條 第3
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위반한 者
7. 第39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한 淨化槽를 販賣한 者
8. 第46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과한 者

第57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
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8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2. 第9條 第2項 또는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1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查를 받지 아니하고 汚水淨化施設, 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사용한 者
4. 第13條 第1項 및 第3項, 第22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淨化施設·淨化槽·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을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 말린 者
5. 第14條 第2項 또는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淨化施設·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그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management한 者
6.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簡易汚水淨化槽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7. 第24條 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
8.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淨化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9. 第35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區域·期限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者
10. 第35條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料金을 받은 者
11. 第42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2. 第4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3.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管理人등의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14.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記錄·보존을 하지 아니한 者
15.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6.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營業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표의 左側란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은 이 法에 따라 같은 표의 右側란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污水淨化施設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廉棄物管理法에 의하여 設置한 污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糞尿處理施設 및 畜產廢水淨化施設은 각각 이 法에 의한 污水淨化施設·淨化槽·糞尿處理施設 및 畜產廢水淨化施設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하여 設置한 畜產廢水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은 이 法에 의한 畜產廢水排出施設 및 淨化施設로 본다.

第4條(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法施行 당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승인·行政處分 기타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法에 의한行政機關의 행위 또는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法施行전의 廉棄物管理法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環境管理公團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16條 第1項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위한 投資에 대한 融資
 -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의 大氣污染防止施設
 - 나.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水質污染防止施設
 - 다. 驚音·振動規制法 第2條의 驚音·振動防止施設
 - 라.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2條의 畜産廢水淨化施設

第17條 第2項 第1號중 “環境保全法 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한”을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 및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6條 第19號중 “環境保全法과 廉棄物管理法”을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驚音·振動規制法·有害化學物質管理法·廢棄物管理法과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로 한다.

③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22條 第2項 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9條 第2項 및 同法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污水淨化施設 또는 凈化槽의 設置申告 및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查

5.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 驚音·振動規制法 第9條

및 污水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 다만,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 監理團의 技術檢討를 받아야 하는 施設은 제외한다.

④ 建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第6項 第4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 第4項에 의한 污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를 “污水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9條 第2項 및 同法 第10條 第2項에 의한 污水淨化施設 및 淨化槽의 設置申告”로 하고, 第7條 第6項 第1號 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 第5項에 의한 污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查”를 “污水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11條 規定에 의한 污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竣工檢查”로 하며, 第53條의 4중 “糞尿淨化槽”를 “淨化槽”로 “廢棄物管理法 第17條”를 “污水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13條”로 한다.

⑤ 寄生蟲疾患豫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廢棄物管理法 第36條 第1項의”를 “污水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第20條 第2項의”로 한다.

第 7 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废棄物管理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中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遵循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废棄物管理法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
廢棄物管理法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糞尿收集 · 運搬業, 糞尿處理業, 糞尿淨化槽製造業)許可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聯營業(糞尿收集 · 運搬業, 運搬業, 糞尿處理業, 淨化槽清掃業)許可
廢棄物管理法 第17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 또는 污水淨化施設의 設計 · 施工業 登錄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 또는 污水淨化施設의 設計 · 施工業 登錄
廢棄物管理法 第17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 · 施工業 登錄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計 · 施工業 登錄
廢棄物管理法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製造業 登錄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 登錄

海洋汚染防止法

1991. 3. 8. 改正
法律 第4365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船舶 및 海洋施設등에서 海洋에 排出하는 기름 · 有害液體物質등과 廢棄物을 規制하고, 海洋의 汚染物質을 제거하여 海洋環境을 보전함으로써 國民의 건강과 財產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기름”이라 함은 石油事業法에서 정하는 原油 및 石油製品(石油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油性混合物(이하 “油性混合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液體物質”이라 함은 섭씨 37.8도에서의 蒸氣壓이 제곱센티미터당 2.8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하는 物質을 말한다.
3. “有害液體物質”이라 함은 기름외의 液體物質중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그 混合物을 포함한다)로서 農林水產部와 交通部의 共同部令(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이 정하는 物質과 그 物質이 함유된 물밸러스트 · 貨物艙의 洗淨水等 液體物質을 말한다.
4. “未評價液體物質”이라 함은 기름 및 有害液體物質외의 液體物質과 그 物質이 함유된 물밸러스트 · 貨物艙의 洗淨水等의 液體物質을 말한다. 다만,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液體貨物로서 共同部令이 정하는 液體物質을 제외한다.
5. “有害液體物質등”이라 함은 有害液體物質과 未評價液體物質을 말한다.

6. “廢棄物”이라 함은 海洋에 排出되었을 경우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기름 및 有害液體物質등을 제외한다)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物質과 海洋에 排出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物質을 말한다.
7. “排出”이라 함은 기름·有害液體物質등 또는 鑛滓등 廢棄物을 海洋에 漏出·流出 또는 投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汚染의 輕減·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科學的 調査·연구를 目的으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지는 流出 및 投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船舶”이라 함은 海洋에서 航行의 用途에 사용하는 船舟類와 다른 船舶에 의하여 引引되거나 밀려야만 航行이 되는 船舟類(이하 “被曳引船”이라 한다)를 말한다.
9. “油槽船”이라 함은 그 貨物艙의 大部分이 散積하는 기름의 運搬을 위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船舶을 말한다.
10. “海洋施設”이라 함은 海域 또는 海域과 陸地를 연결하여 設置되는 構造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物을 말한다.
11. “船底廢水”라 함은 船舶의 밑바닥에 끈 油性混合物을 말한다.
12. “廢油”라 함은 船舶 또는 海洋施設에서 생긴 기름으로서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기름과 海洋流出로 인하여 쓸 수 없게 된 기름을 말한다.
13. “廢油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油의 처리를为目的으로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다만, 船舶안에서 생긴 廉油를 自體處理하는 施設을 제외한다.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의 規定은 다음 각號의 海洋污染의 경우에 이를 適用한다.

1. 大韓民國領土에 接續되는 領域안 및 기타 領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域안에서 모든 船舶 또는 海洋施設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海洋污染
2. 第1號에서 정한 海域밖에서 海底鑛物資源開發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海底鑛區의 開發과 관련하여 발생한 海洋污染
3. 第1號에서 정한 海域밖에서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 船舶에 의하여 행하여진 海洋污染
4.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污染特別管理海域안에서의 海洋污染

第4條(適用排除) 이 법의 規定은 放射性物質에 의한 海洋污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章 船舶으로부터의 기름·有害液體物質등 또는 瘢棄物의 排出規制

第1節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規制

第5條(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禁止) ① 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기름을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의 排出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은 船舶에서 기름(貨物油가 섞인 油槽船의 물밸러스트·貨物艙의 洗淨水 및 船底廢水를 제외한다)을 共同部令이 정하는 排出海域에 共同部令이 정하는 排出基準 및 방법에 적합하게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은 油槽船에서 貨物油가 섞인 물밸러스트·貨物艙의 洗淨水 및 船底廢水를 共同部令이 정하는 排出海域에 共同部令이 정하는 排出基準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第1項 本文의 規定은 洗淨된 油槽船의 貨物艙의 물밸러스트를 共同部令이 정하는 洗淨度에 적합하게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기름의 海洋排出防止를 위한 設備등의 設置) ① 船舶所有者(賃貸된 船舶의 경우에는 船舶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의하여 船舶에 기름의 排出을 방지하기 위한 設備(이하 “기름污染防治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는 第6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作動하여야 한다.

第7條(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積載制限) ①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를 設置한 船舶으로서 共同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燃料油탱크에는 물밸러스트를 積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船舶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共同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共同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船首탱크와 衝突隔壁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積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船舶안의 油性混合物 및 廢油의 처리등) ① 船舶안에서 발생하는 油性混合物 등 廢油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船舶안에 貯藏하거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廢油處理施設,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處理施設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處理施設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물밸러스트·洗淨水 또는 船底廢水를 그 排出基準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船舶안에서 발생하는 油性混合物 등 廢油 기타 汚染物質을 燃却하고자 하는 船舶所有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船舶에 燃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燃却設備가 設置된 船舶의 船長은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燃却記錄簿을 船舶안에 비치하고 汚染物質의 燃却量 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第9條(기름記錄簿) ① 船長(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를 말한다)은 기름記錄簿를 船舶(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의 事務室을 말한다)안에 비치하고 기름使用量 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다만, 油槽船외의 船舶으로서 船底廢水가 생기지 아니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錄을 한 날부터 3年으로 하며, 그 記載事項·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適用除外)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節 船舶으로부터의 有害液體物質등의 排出規制

第11條(船舶으로부터의 有害液體物質의 排出禁止) ① 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有害液體物質을 排出하는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有害液體物質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有害液體物質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有害液體物質의 排出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은 共同部令이 정하는 有害液體物質의 散積運搬에 이 용되고 있는 貨物艙(물밸러스트의 排出을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으로부터 共同部令이 정하는 淨化方法에 따라 洗淨된 물밸러스트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은 共同部令이 정하는 排出海域에서 共同部令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排出方法에 따라 有害液體物質을 排出(第2項의 規定에 의한 물밸러스트의 排出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2條(有害液體物質의 海洋排出防止를 위한 設備등의 設置) ① 船舶所有者는 有害液體物質을 散積하여 運搬하는 船舶으로서 共同部令이 정하는 船舶에 共同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의하여 有害液體物質의 船舶안의 貯藏 또는 처리를 위한 設備 기타 有害液體物質에 의한 海洋污染을 방지하기 위한 設備(이하 “有害液體物質污染防止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有害液體物質을 散積하여 運搬하는 船舶으로서 共同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貨物艙은 衝突·坐礁 기타 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大量의 有害液體物質이 排出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共同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도록 이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有害液體物質 排出方法 및 設備에 관한 指針書를 작성하여 당해 船舶의 船長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第13條(有害液體物質記錄簿) ① 船長(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를 말한다)은 有害液體物質記錄簿을 船舶(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의 事務室을 말한다)안에 비치하고 有害液體物質의 運搬量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液體物質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量 한 날부터 3年으로 하며, 그 記載事項·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14條(船舶으로부터의 未評價液體物質의 排出規制등) ① 第11條 第1項의 規定은 未評價液體物質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未評價液體物質을 船舶으로 散積하여 運搬하고자 하는 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海運港灣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된 未評價液體物質이 海洋環境의 보전에 有害한지의 여부를 評價하여야 한다.

④ 海運港灣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環境處長官과 協議할 수 있다.

第15條(國際協約規定의 적용) 國際協約에서 規定하는 有害液體物質의 分類가 이 法에 의한 分類와 다를 때에는 1973년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 및 1973年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에 관한 1978年 議定書(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의 附屬書II의 規定에 따른다.

第3節 船舶으로부터의 廢棄物의 排出規制

第16條(船舶으로부터의 廢棄物의 排出禁止) ① 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廉棄物을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廢棄物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廢棄物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廢棄物의 排出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은 船舶안에 있는 船員과 乘客등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 黣尿등 廢棄物을 總理令이 정하는 海域에서 總理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은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아埋立하고자 하는 場所에 廢棄物을 總理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④ 第1項 本文의 規定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廢棄物을 그 排出이 가능한 海域에서 總理令이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海洋排出이 가능한 廢棄物의 종류·排出海域의 범위 및 排出者에 대한 排出海域 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7條(廢棄物의 海洋排出防止를 위한 設備등의 設置) ① 船舶所有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船舶에 共同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의하여 船舶안에서 발생하는 黣尿등 廢棄物을 貯藏 또는 처리하기 위한 設備(이하 “廢棄物污染防治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污染防治設備는 第6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第18條(廢棄物運搬船의 登錄) ① 第16條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排出海域指定을 받은 者는 廢棄物의 運搬 및 排出에 사용하고자 하는 船舶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하는 船舶의 施設·人力·裝備 등의 登錄要件과 廢棄物의 收集·貯藏·運搬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9條(變更申告등) ①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

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登錄事項에 變更이 있는 경우
2. 廢棄物運搬船을 總理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廢棄物의 運搬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廢棄物運搬船을 廢棄物運搬의 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② 環境處長官은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로서 第1項 第2號 또는 第3號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申告를 한 者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廢棄物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貯藏施設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를 命할 수 있다.

第20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產者 ·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21條(登錄의 取消 등) ① 環境處長官은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運搬船의 使用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1年に 2回이상 運搬船 使用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4. 廢棄物을 第16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에 排出한 행위를 한 경우
5. 登錄후 계속 1년이상 廢棄物運搬 및 排出實績이 없는 경우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 環境處長官은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가 法人인 경우 第20條 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登錄을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 期間을 6月以上 주어야 한다.

第22條(廢棄物處理記錄簿) ①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船舶의 船長은 廢棄物運搬에 사용하는 船舶안에 廢棄物處理記錄簿를 비치하고 廢棄物處理量 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하며, 그 記載事項·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3條(廢棄物委託者の義務등) ① 製品의 生產등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한 廢棄物을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이 變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處理하는 廢棄物은 第16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排出이 가능한 廢棄物이어야 한다.

第3章 船舶의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檢查등

第24條(検査) 第6條 第1項·第12條 第1項 또는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 또는 廢棄物汚染防止設備(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할 船舶과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한 貨物艙을 設置하여야 할 船舶(이하 “検査對象船舶”이라 한다)所有者는 당해 海洋汚染防止設備 또는 貨物艙(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행하는 다음 구분에 의한 檢查를 받아야 한다.

- 定期検査：海洋汚染防止設備등을 船舶에 최초로 設置하여 航行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만료한 때 행하는 精密한 檢查

2. 中間檢查：定期検査와 定期検査와의 中間に 共同部令이 정하는 時기에 행하는 簡易한 檢查
3. 臨時檢查：海洋汚染防止設備등을 交替·改造 또는 修理를 한 때 행하는 檢查
4. 臨時航行檢查：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기전에 船舶을 臨時로 航行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檢查

第25條(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교부) ①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查 또는 臨時航行檢查에 合格한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26條(協約證書의 교부등) ①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查에 合格한 船舶所有者로부터 당해 船舶을 國際航行에 사용하기 위하여 國際協約에 따른 海洋汚染防止證書(이하 “協約證書”라 한다)의 交付申請이 있는 때에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檢查對象船舶의 大韓民國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이 國際協約의 當事國인 外國(이하 “協約當事國”이라 한다)의 政府로부터 協約證書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國駐在 大韓民國의 領事を 통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③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協約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당해 國의 船舶에 대하여 協約證書의 交付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에 대하여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행하고, 당해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에게 協約證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協約證書는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로 본다.

第27條(檢査對象船舶의 航行등) ① 船舶所有者は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檢查對象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船舶所有者は 協約證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檢查對象船舶을 國際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船舶所有者は 海洋汚染防止證書 ·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協約證書 (이하 “海洋汚染防止證書등” 이라 한다)에 記載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해 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에 대한 檢查 또는 船舶安全法 第5條 第1項(漁船인 경우에는 漁船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查를 받기 위하여 試運轉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을 교부받은 船舶所有者は 당해 船舶안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28條(検査의 代行) ①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에 대한 檢査를 檢査能力이 있는 者를 지정하여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的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29條(不適合船舶에 대한 措置) ①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 第6條 · 第12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당해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交替 · 改造 또는 修理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船舶所有者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船舶을 航行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海洋環境의 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에 대하여 航行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第30條(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有效期間) ① 海洋汚染防止證書등(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그 有效期間의 起算基準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②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有效期間 만료후 共同部令이 정하는 期間의 범위안에서 그

效力을 연장할 수 있다.

第31條(再検査) 第24條의 规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檢査를 받은 者가 그 檢査結果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에게 再検査를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再検査를 申請한 者는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관련부분의 原狀을 變更하여 서는 아니된다.

第32條(外國船舶에 대한 特例) 第24條 · 第25條 및 第27條 내지 第31條의 规定은 船舶法 第2條의 规定에 의한 大韓民國船舶외의 船舶(이하 “外國船舶”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3條 第1號의 海域안에서만 航行하는 外國船舶
2. 裸傭船한 外國船舶
3. 漁船法 第26條의 规定에 의하여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讓受 또는 借船한 漁船

第33條(外國船舶의 監督) ① 海運港灣廳長은 우리나라의 港口 또는 沿岸에 있는 外國船舶에 설치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 國際協約에 의한 技術上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의 船長에 대하여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交替 · 改造 또는 修理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第29條 第2項의 规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章 海洋施設로부터 기름 · 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第34條(海洋施設로부터 기름 · 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의 排出禁止 등) ① 누구든지 海洋施設로부터 기름 · 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이하 “기름등廢棄物”

이라 한다)을 海洋에 排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海洋施設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등廢棄物의排出

2. 海洋施設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등廢棄物이 계속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등廢棄物의排出

(2) 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施設안에 있는 者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糞尿등廢棄物을 總理令이 정하는 海域에 總理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3) 第1項 本文의 規定은 기름·有害液體物質 또는 第16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을 總理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4) 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施設에서 생기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의의 鎳滓等廢棄物을 總理令이 정하는 海域에서 總理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5) 海洋施設에서 발생하는 기름등廢棄物은 第1項 但書 및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排出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廢油處理施設, 第45條의 規定에 의한自家處理施設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貯藏·處理施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第35條(海洋施設의 設置登錄) 海洋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有水面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管理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36條(海洋施設안의 기름記錄簿) ① 기름을 취급하는 海洋施設의 管理者는 기름記錄簿를 海洋施設안에 비치하고 기름使用量등을 記錄하되, 海洋施設안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海洋施設管理者의 事務室에 비치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

年으로 하며, 그 記載事項 ·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廢油處理 · 清掃業等

第37條(事業의 許可)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事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海運港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廢油處理業 : 廢油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油를 收去하여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事業
 2. 油艙清掃業 : 油艙清掃施設을 갖추고 船舶의 油艙清掃와 그 過程에서 발생한 廢油를 收去하는 事業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油處理業 또는 油艙清掃業(이하 “廢油處理 · 清掃業”이라 한다)의 施設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油處理 · 清掃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以上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油處理 · 清掃業의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39條(事業開始의 申告) 第3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廉油處理 · 清掃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廉油處理 · 清掃業者”라 한다)가 事業을 開始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0條(收去된 廉油의 처리등) ① 船舶 또는 海洋施設에서 발생하거나 海洋에 流出된 廉油를 收去한 者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廉油處理施設,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處理施設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處理施設에서 이들 처리하여야 한다.

② 第37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油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油處理業者”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없이 廢油의 引受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廢油處理業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事務室에 廢油處理臺帳을 비치하고 廢油處理量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廢油를 처리할 경우 引渡者 및 引受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引渡·引受證을 작성·보존하되, 그 保存期間은 作成日부터 1年으로 한다.

第41條(廢油處理施設의 유지) ① 廢油處理·清掃業者가 設置하는 廢油處理施設 또는 油艙清掃施設은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② 廉油處理業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廉油處理方法에 적합하도록 廉油를 처리하여야 한다.

第42條(廢油處理·清掃業者の 操業停止 등) ① 海運港灣廳長은 廉油處理施設 또는 油艙清掃施設이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廉油處理·清掃業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施設의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43條(休業·廢業의 申告 등) ① 廉油處理·清掃業者가 그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業하거나 廉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海運港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의 경우 그가 처리하지 아니한 廉油가 貯藏施設등에 남아 있는 때에는 당해 廉油의 적정한 처리를 命할 수 있다.

第44條(廢油處理·清掃業의 許可取消) ① 海運港灣廳長은 廢油處理·清掃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海運港灣廳長은 廉油處理·清掃業者가 法人인 경우 第38條 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期間을 6月以上 주어야 한다.

第45條(自家處理施設) ① 船舶 또는 海洋施設에서 생기는 기름등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陸上에 自家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② 第37條 第2項, 第39條, 第40條 第3項·第4項 및 第41條 내지 第43條의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6條(貯藏·處理施設등의 設置·운영) ① 港灣法 第4條 및 漁港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하 “港灣管理廳”이라 한다)은 당해 港灣을 入·出航하는 船舶과 海洋施設로부터 발생되는 기름등廢棄物을 貯藏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施設(이하 “貯藏·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貯藏·處理施設의 施設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③ 港灣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貯藏·處理施設에서 기름등廢棄物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 수 있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貯藏·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港灣管理廳은 기름등廢棄物의 貯藏 또는 處理臺帳을 비치하고 기름등廢棄物의 貯藏·處理量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貯藏·處理施設의 設置·운영과 기름등廢棄物의 貯藏 또는 處理臺帳의 記載事項·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6章 海洋污染防治措置

第47條(大量의 기름등廢棄物이排出되는 경우의 申告) ① 기름등廢棄物이 大統領
令이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海洋에排出(이하 “大量의 기름등廢棄物의
排出”이라 한다)된 경우와 그 基準을 초과하여排出될 우려가 있다고豫想될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지체없이 内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이 積載되어 있거나 積載되어 있던 船舶의 船長이나
施設의 管理者
2. 船舶 또는 施設의 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기름등廢棄物의 排出原因이 되는
행위를 한 者
3. 기름등廢棄物이 海面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사항은 内務部令으로 정한다.

第48條(大量의 기름등廢棄物이排出되는 경우의 防除措置) ① 大量의 기름등廢棄
物이排出되는 경우 第47條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排出되는 기름등廢棄物의 계속되는排出의 방지와排出된 기름
등廢棄物의擴散防止 및 제거(이하 “防除”라 한다)를 위한 應急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大量의 기름등廢棄物이排出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排出되는 기름등廢棄物을 신속히收去·처리
하는 등 필요한 防除措置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1. 第47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施設이
賃貸되어 있을 때에는 施設의 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第1號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로서 그 業務와 관련하여 기름등廢棄物의 排
出原因이 되는 行위를 한 者의 使用者

③ 第2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가 同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内務部長官은 그 者에게 防除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④ 大量의 기름이 港内 또는 港의 부근에 있는 船舶으로부터 배출된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措置를 취하는데 적극 協助하여야 한다.

1. 당해港이 排出된 기름의 積載港일 때에는 당해 기름의 送貨人
 2. 당해港이 排出된 기름의 揚陸地일 때에는 당해 기름의 受貨人
 3. 船舶이 繫留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繫留施設의 管理者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름등廢棄物을 防除하는데 사용하는 資材 및 藥劑는 第6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型式承認 ·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第49條(資材 및 藥劑의 비치) ① 港灣管理廳 ·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는 排出되는 기름등廢棄物을 防除하기 위하여 당해 船舶 · 海洋施設 또는 保管施設안에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여야 할 船舶 · 海洋施設 또는 保管施設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資材 및 藥劑의 종류 · 數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50條(費用의 부담) ① 内務部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하여야 할 者가 그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措置만으로는 海洋의 汚染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緊急防除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協助를 얻어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防除措置에 소요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船舶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시킨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경우에 기름등廢棄物의 排出에 대하여 責任을 질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船舶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는 그 者에 대하여 부담한 費用의
求償權을 가진다.

第51條(海洋污染防治對策委員會의 設置) ① 기름등廢棄物의 流出事故등 海洋污染
事故로 海洋環境의 보전에 현저한被害가 있거나被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緊急防除등 필요한措置를 하게 하기 위하여 内務部長官 소속하에 海洋污
染防除對策委員會를, 海洋警察隊長 소속하에 地域海洋污染防治對策協議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防除對策委員會 및 地域防除對策協議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財產의 處分) 内務部長官은 沿岸海域에 排出된 大量의 기름등廢棄物에 의
하여 海域이 심하게 汚染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해하고 財產상의 중대한
損害를 加하거나 水產業등의 事業活動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防除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범위안에서 기름등廢棄物이 積載되어 있는 당해 船舶의 破壞,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의 燃却외에 그 기름등廢棄物이 있는 現場 인근의 海域에 있는
財產을 處分할 수 있다.

第7章 補　　則

第53條(廢船 및 船舶解撤의 規制등) ① 누구든지 船舶을 海域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域에 共同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버리는 경우
또는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遭難船舶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船舶을 解撤하고자 하는 者는 解撤 및 이와 관련된 作業過程에서 기름
등廢棄物을 排出하지 아니하도록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污染防治
를 위한 作業計劃을 수립하여 内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第54條(污染防治管理人) ① 共同部令이 정하는 船舶所有者는 船舶마다 그 船舶의 乘務員중에서 船長을 補佐하여 船舶으로부터의 기름등廢棄物의排出防止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구분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1. 有害液體物質을 散積하여 運搬하는 船舶：기름 및 廢棄物의 汚染防止管理人과 有害液體物質의 汚染防止管理人 각 1人
2. 第1號외의 船舶：기름 및 廢棄物의 汚染防止管理人
- ② 海洋施設設置者는 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등廢棄物의排出防止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 ③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한 證憑書類를 船舶 또는 海洋施設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的 資格·業務·內容·遵守事項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55條(關係機關의 協助) ① 内務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긴급한 海洋污染防治를 위한 人力 및 裝備의 動員과 海洋環境의 보전에 관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 기타 필요한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内務部長官으로부터 協助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56條(出入検査·보고등) ① 内務部長官은 海洋污染防治 및 海洋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船舶·海洋施設 또는 그 事務所, 廉油處理·清掃施設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検査·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7條(海洋環境監視員) ① 内務部長官은 第5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職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海洋環境監視員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監視員의 任命·資格·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停船·檢索·拿捕·入出港禁止等) 船舶이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은 停船·檢索·拿捕·入出港禁止 기타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59條(海域의 管理)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汚染物質등의 堆積으로 인하여 沿岸水質이 惡化되거나 惡化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海域의 水質을 개선하기 위하여 堆積된 汚染物質의 제거등을 위한 浚渫등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港灣法에 의한 港灣區域, 公有水面管理法에 의한 公有水面, 漁港法에 의한 漁港區域의 海域에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汚染외의 汚染이 있을 때에는 그 海域을 관할하는 主務官廳의 長은 防除에 필요한 資材 또는 藥劑등을 사용하여 이를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름등廢棄物을 共同部令이 정하는 量을 초과하여 排出함으로써 汚染을 야기한 原因行爲者가 확인된 때에는 그로 하여금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第50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에 이를 準用한다.

第60條(海域別 水質基準) ① 環境處長官은 海洋環境의 적정한 보전을 위하여 海域의 自然地形·用途 및 陸地로부터의 거리등에 따라 海域別 海水의 水質基準을 設定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域別 海水의 水質基準을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海域을 관할하는 主務官廳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海域別 水質基準을 設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61條(沿岸污染의 방지) ① 環境處長官은 閉鎖性海域등이 汚染되어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海域別 海水의 水質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고, 海洋環境의 보전에 현저한 障害가 있거나 障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汚染防止를 위한 特別對策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汚染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陸地에
接續한 일정한 海域을 沿岸污染特別管理海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特別管理海域안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海域의 이용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관계行政機關에 沿岸污染防止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環境處長官은 沿岸污染狀況 및 汚染源의 調査등을 위하여 汚染測定網을 設置하고 이를 定期的으로 管理·운영하여야 한다.

第62條(國庫補助등) ① 國家는 第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浚渫등의 措置를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할 경우에는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 ② 國家는 海洋污染防止設備, 廉油處理·清掃業의 設備 기타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施設의 設置 또는 개선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63條(海洋環境保全諮詢委員會) ① 海洋環境保全에 필요한 政策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 소속하에 海洋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둔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諮問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4條(海洋污染防止設備·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 ① 海洋污染防止設備 (有害液體物質污染防止設備을 제외한다. 이하 第3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에서 같다)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運港灣廳長의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 ② 第48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材 또는 藥劑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미리 海運港灣廳長 또는 環境處長官으로부터 각각 海洋污染防止設備나 資材 또는 藥劑에 대한 性能試驗을 받아야 한다.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海洋污染防止設備나

資材 또는 藥劑를 製作 · 製造하거나 輸入한 때에는 각각 海運港灣廳長 또는 環境處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⑤ 協約當事國에서 船舶에 海洋污染防止設備을 設置하거나 資材 또는 藥劑를 비치한 者는 總理令 또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運港灣廳長 또는 環境處長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者는 각각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 性能試驗 및 檢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海運港灣廳長 또는 環境處長官은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污染防止設備나 資材 또는 藥劑에 대한 性能試驗 · 檢定 및 인정에 관한 業務를 각각 그 能力이 있는 者를 지정하여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 性能試驗 · 檢定 및 인정과 이에 관한 代行者的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總理令 또는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⑧ 第31條 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污染防止設備의 檢定에 대한 볼록에 이를 準用한다.

⑨ 海運港灣廳長 또는 環境處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第65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行為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각각 總理令 · 內務部令 또는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第66條(聽聞) 環境處長官 ·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總理令 또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取消 또는 運搬船의 사용정지
2.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航行停止處分
3. 第4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廉油處理 · 清掃業의 操業停止命令

4. 第44條의 规定에 의한 廢油處理·清掃業의 許可取消
5. 第64條 第9項의 规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第67條(關係要員에 대한 教育·訓練) 第54條의 规定에 의한 污染防止管理人, 第18條 및 第37條 规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 및 廢油處理·清掃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과 船舶安全法 第16條의3의 规定에 의한 船舶解撤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을 採用한 者는 그 소속 關係要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年마다 1回이상 海洋污染防治에 관한 教育·訓練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68條(手數料) ① 이 法에 의한 檢查·型式承認·性能試驗·檢定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 또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28條 第1項 및 第64條 第6項의 规定에 의하여 檢查등의 代行者로 지정된 者가 檢查·檢定·性能試驗·型式承認 또는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代行者가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의 승인을 얻은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69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內務部長官·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地方環境廳長·海洋警察隊長 및 海面에서 가장 가까운 警察機關의 長 또는 地方海運港灣廳長에게 각각 委任할 수 있다.

第70條(總理令·部令의 制定·改正에 관한 協議) 環境處長官·內務部長官·農林水產部長官 또는 交通部長官은 總理令·內務部令 또는 共同部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部處의 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8章 罰則

第71條(罰則) ① 第5條 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기름을 排出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過失로 인하여 第5條 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기름을 排出한 者

2.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害液體物質을 排出한 者
3.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評價液體物質을 排出한 者

第72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排出한 者
2. 第27條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3.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름등廢棄物을 排出한 者
4. 第3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廉油處理業 또는 油船清掃業을 한 者
5. 第4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操業停止期間중 操業을 한 者
6. 第48條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 또는 防除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7. 第53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을 海洋에 버린 者

第73條(罰則)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過失로 인하여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害液體物質을 排出한 者
 2. 過失로 인하여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評價液體物質을 排出한 者
- ②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停船·檢索·拿捕·入出港禁止 기타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4條(罰則) ① 第47條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過失로 인하여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排出한 者
 2. 過失로 인하여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름·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을 排出한 者
- (3)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1項, 第12條 第1項·第2項 또는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污染防止設備등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2.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未評價液體物質을 運搬한 者
 3.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運搬 또는 排出한 者
 4. 第19條 第2項에 의한 廢棄物의 處理命令을 위반한 者
 5. 第23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排出이 가능하지 아니한 廢棄物을 委託한 者
 6.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7.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海洋施設을 設置한 者
 8. 第4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廉油의 處理命令을 위반한 者
 9.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自家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10. 第64條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性能試驗·檢定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者

第75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3項·第7條, 第8條 第1項·第2項 또는 第34條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11條 第2項에 의한 共同部令이 정하는 淨化方法에 의하여 洗淨되지 아니한 물밸러스트를 排出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4.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洋污染防止設備등의 관련부분의 原狀을 變更한 者
5. 第40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廢油의 引受를 거부한 者
6.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76條(罰則)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2項 또는 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름污染防止設備 또는 廢棄物污染防止設備을 設置한 者
 2.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3.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解撤作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5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 ② 第5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查·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7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1條 내지 第76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78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查代行者와 第64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性能試驗·檢定 및 認定代行者의 任員 및 職員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污染防止設備등의 檢查와 第64條 第4項·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設備·資材 또는 藥劑의 檢定 및 인정에 관하여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9條(過怠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 第3項·第9條 第1項·第13條 第1項·第22條 第1項·第36條 第1項

또는 第40條 第3項 ·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簿 또는 臺帳을 비치 ·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載한 者

2. 第12條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有害液體物質排出方法 및 設備에 관한 指針書를 제공하지 아니한 者
3.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者
5. 第27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污染防止證書를 船舶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者
6.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廉油處理業 또는 油輪清掃業을 한 者
7. 第40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 · 引受證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記載한 者
8.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休業 또는 廢業한 者
9. 第5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污染防止管理人 任命證憑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10.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教育 · 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者

第80條(過怠料의 賦課 · 徵收등) ①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 · 內務部長官 ·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賦課 · 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일이내에 環境處長官 · 內務部長官 ·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 內務部長官 · 水產廳長 또는 海運港灣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

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水產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2條 第1項중 “海洋污染防止法 第2條 第7號”를 “海洋污染防止法 第2條 第10號”로 한다.

第3條(軍艦 및 非商業用政府船舶에 대한 特例)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4條 第2項에 해당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2년까지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船舶에 대하여는 海洋을 汚染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4條(船舶의 污染物質燒却設備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船舶으로서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燃却設備을 設置하고 있는 船舶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당해 設備를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第5條(有害液體物質污染防止設備등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船舶으로서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液體物質污染防止設備 또는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艙을 設置하여야 할 船舶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당해 設備 또는 貨物艙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6條(廢棄物排出海域의 指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로서 廢棄物排出海域의 指定을 받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6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로서 廉棄物排出海域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廉棄物排出海域의

指定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同 期限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登錄이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7條(廢棄物污染防治設備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船舶으로서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污染防治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船舶所有者は이 法 施行로부터 1年이내에 당해 設備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8條(廢棄物運搬船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는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廉棄物運搬船의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로부터 1년이내에 第18條 第2項의規定에 의한 施設·人力·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9條(海洋污染防治設備의 檢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의하여 海洋污染防治裝置등에 관한 檢查를 받은 船舶所有者は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污染防治設備에 대한 檢查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0條(國際海洋污染防治協約證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의하여 교부받은 國際海洋污染防治證書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協約에따른 海洋污染防治證書로 본다.

第11條(污染防治管理人の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의하여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가 任命한 汚染防止管理人은 第5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汚染防止management人으로 본다. 다만, 第54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경우 당해 船舶所有者は 이 法 施行로부터 2月이내에 有害液體物質의 汚染防止management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第12條(海洋污染防治를 위한 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海洋污染防治를 위한 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者는 第64條 第2項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으로부터 型式承認·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海洋污染防治를 위한 資材 또는 藥劑의 檢定 또는 인정에 관한 代行者 지정을 받은 者는 環境處長官으로부터 第64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者 지정을 받은

192 環境法研究(第13卷)

것으로 본다.

第13條(다른 法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에서 종전의 이 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